

【 6 】 양주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6. 2. 27

제출자 : 양주군수

□ 제안이유

- 자연발생 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락철 유원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처리를 위하여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9조 및 양주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양조례간의 상충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유원지, 공원,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하나 타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지역은 예외로 함.

(안 제10조 제3항)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

양주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주군의 타 조례에 의하여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지역은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② (생략) <u>(신설)</u>	제1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주군의 타 조례에 의하여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지역은 예외로 한다.

제 5 편 사회진흥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1990. 9. 7]
[조례 제1331호]

개정 1991.12.31 조례 제1396호

〃 1993. 8. 6 조례 제1458호

〃 1993.11.25 조례 제1466호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 산간, 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 및 동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징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로 폐적한 자연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공립 공원이나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국민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연발생유원지를 말한다.
2. "수수료"라 함은 군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시설의 확충과 유지 관리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필요 한 비용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 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자연발생유원지 구역 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 3조(지정) ① 자연발생유원지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구역 중 군수가 지정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발생유원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년월일,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4조(폐지 및 구역변경) ① 군수는 자연발생유원지가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 등 기타 사유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 5 편 사회진흥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 9 조(수수료)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자연환경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② 수수료는 이용객 및 청소의무자(건물 또는 토지의 점유, 소유자를 말한다)로부터 징수하되, 그 금액은 별지와 같다. 다만, 청소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수수료 요율표에 의한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입구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청소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는 “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한다.

2. 수수료는 군수가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케 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2. 당해 자연발생유원지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3. 6세미만인 자 및 65세이상인 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입장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걸환자
2. 수수료납부를 거부하는 자
3.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4. 자연환경 오손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
5.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수수료 환불)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보상) 일정량 이상의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입장자에게 대하여는 제9조 제2항 “별표 1” 기준에 준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의 사용) ① 징수된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내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0조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임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 8 편 환경보호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1994. 12. 29]
[조례 제1518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 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장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을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이하 "일반폐기물"이라 한다)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일반폐기물 중 법 제14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 4 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한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등을 정할 수 있다.

제 8 편 환경보호 양주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년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 제4 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동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 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제1호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군수는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추6)